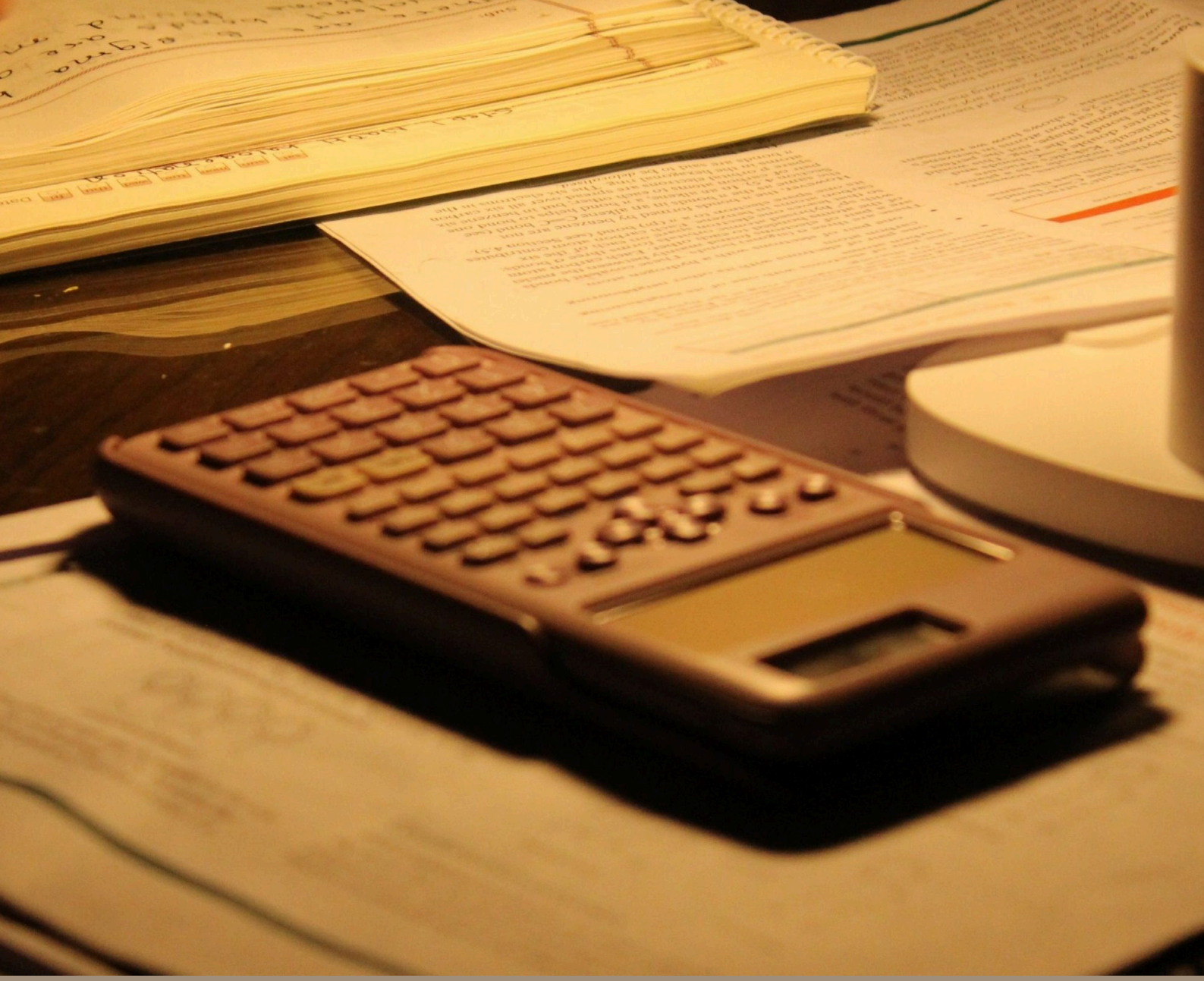


외부감사 대상 판정, 감사인 선임, 지정 가능성, 독립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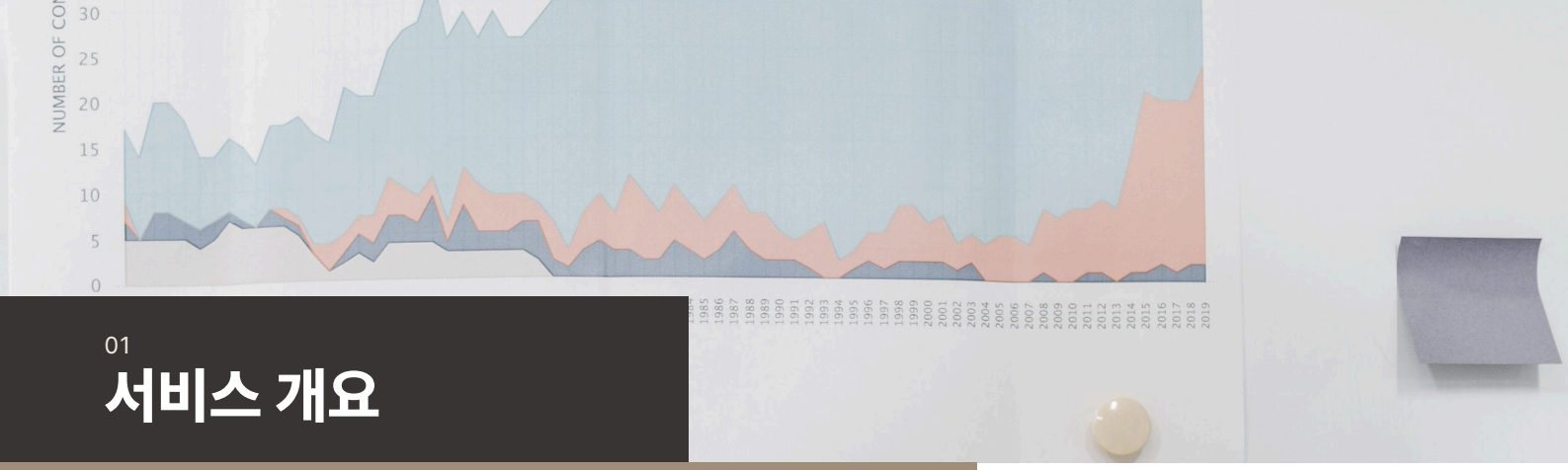
회계법인 리파인드

회계감사·감사 대응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숫자로, 선임 기한은 개시일과 감사 이력으로 정합니다

검토 결론

주식회사는 자산 500억원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미만이어도 4개 중 2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영 §5①).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회사의 작성 요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작성 관련 자문도 금지됩니다(§6⑥, §42 2호).

확인 항목 4개

1
대상 판정
자산·부채·종업원은 직전 연도 말, 매출은 직전 연도

2
선임 기한
개시일부터 45일, 미감사 회사는 4개월

3
선정 주체
감사·감사위원회, 상장사 등은 요건 추가

4
독립성
재무제표 대리 작성·작성 관련 자문 불가

이런 분께

-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대표와 재무 책임자
- 감사인 선임 기한과 지정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분
- 감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고 싶은 분
- 감사인과 자문사의 업무 범위를 알고 싶은 분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현황 진단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로 대상 여부와 선임 기한을 계산합니다. 지정 대상 요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도 같은 자료로 봅니다.
2 선임 준비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 기준·절차를 미리 마련하고(영 §13③), 감사보수·시간·인력을 문서로 정합니다(법 §10⑤). 당사는 감사인 후보가 아닌 회사에만 그 구성을 점검합니다. 당사를 후보로 검토하는 회사의 선정 자료는 회사가 직접 작성하고 당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3 감사 대응	재무제표 제출 기한(정기총회 6주 전)에 맞춰 결산 자료를 정리하고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답합니다. 당사가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사에는 결산 정리, 계산·분개, 회계처리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단계는 당사가 감사인이 아닌 회사에만 제공합니다.
4 보고·사후	감사보고서 수령, 비치·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일정을 정리합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응 기한도 이 단계에서 일정표에 기재합니다.



02

대상 판정과 선임 구조

누가 대상인지, 누가 감사인을 정하는지는 조문에 숫자로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사로부터 독립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제도입니다(외감법 §4①). 대상 여부, 선임 기한, 선정 주체, 감사인이 하지 못하는 일이 모두 숫자와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그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도해 1. 외부감사 진행 흐름

대상 판정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
→
감사인 선임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
→
감사 수행
재무제표 제출, 자료 열람
→
감사보고서
총회 1주 전 제출·비치
→
제출·공시
감사인이 총회 후 2주 내 제출

자산 500억 또는 매출 500억, 아니면 4개 중 2개

감사인은 원칙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대상 여부는 올해 실적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로 정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감사 없는 유한회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사원총회 승인, 미만이면 회사 선정입니다. 이들이 아닌 회사가 직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면 그 감사인이 선정되고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수·시간·인력 문서는 그대로 필요합니다(§10④⑤, §12②3호).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습니다(§6①).

근거: 근거: 외감법 §4①, §6①, §10④⑤, §12②, 같은 법 시행령 §5①, §13①

도해 2. 외부감사 대상 판정 기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기준 개수가 다릅니다.

판정 항목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	같음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 100억원, 종업원 100명 이상	4개 중 2개 이상이면 대상	사원 50명 이상을 더한 5개 중 3개 이상이면 대상
주권상장법인, 해당·다음 사업연도에 상장하려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법 §4①1·2호)	해당 없음
기준 시점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은 12개월로 환산	2019.11.1 이후 주식회사에서 조직변경했다면 등기일부터 5년간 주식회사 기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한 회사, 선임기간 종료일에 해산·청산·파산 등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영 §5③)	같음

종업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등)와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영 §5①3호 라목).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놓치면 기한 도과, 지정 요구, 과태료나 벌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대상 판정과 기준 시점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모두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 1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종업원 100명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중 2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판정이 틀리면 선임 기한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나고, 기한을 넘긴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요구 대상이 됩니다(§11①2호). 감사인을 선임한 뒤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0① 단서).

근거: 근거: 외감법 §4①3호, §10① 단서, §11①2호, 시행령 §5①

2 선임 기한과 선정 주체

기한은 세 가지입니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개시일 이전, 직전에 감사를 받은 회사는 개시일부터 45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입니다.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선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42 4호). 선정 기준·절차는 미리 마련하고 보수·시간·인력은 문서로 정합니다(§10⑤, 영 §13③). 선임 뒤에는 정기총회 보고(또는 주주 통지·공고)와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합니다(§12).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같은 감사인을 선임합니다(§10③).

근거: 근거: 외감법 §10①②③⑤, §12①②, §42 4호, 시행령 §13③

3 지정 대상과 유예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한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또는 자산 5천억원(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등은 1천억원) 이상이고 대주주 측 지분 50% 이상에 대표이사도 대주주 측인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 지정 선임 요구 대상입니다(법 §11②, 영 §15①⑤⑥). 유예는 지정감사인 선임 1개 사업연도 이상, 감사위원회 설치,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수정 공시·적정의견 외 의견 없음 등 요건을 갖춘 회사가 신청하고,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3개 사업연도 적용됩니다(영 §15②③).

근거: 근거: 외감법 §11②③, 시행령 §15①②③⑤⑥⑧

4 재무제표 작성 책임

재무제표는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 작성합니다.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계산·분개를 대신 하거나,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거나, 처리방법 결정에 관여할 수 없고 회사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영 §8⑥).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42 2호),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는 지정 요구 대상입니다(§11①5호). 처리방법은 회사가 정하고, 감사인은 정한 결과를 감사합니다.

근거: 근거: 외감법 §6①⑥, §11①5호, §42 2호, 시행령 §8⑥

5 비감사업무 제한

감사계약 기간에는 그 회사(연결 대상 회사 포함)에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재무정보체제 구축, 자산 매매 실사·가치평가, 인사·조직 지원, 보험계리, 민·형사 소송 자문, 자금조달 알선, 임원 역할의 경영 의사결정과 대통령령이 정한 이해상충 업무를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21②③).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회사의 임원이거나 과거 1년 내 그랬다면, 본인이 직원이거나 과거 1년 내 직원이었다면(배우자는 재무 사무 직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회계법인은 주식 소유·출자 회사와 사원이 그런 관계인 회사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33①).

근거: 근거: 공인회계사법 §21①②③, §33①②, 외감법 §13①

6 내부회계 적용과 감사인 교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고, 비상장사는 자산 5천억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입니다. 유한회사와 법인세법 §51의2 해당 법인 등은 제외됩니다(법 §8①, 영 §9①). 대상 회사가 구축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47②1호). 감사인이 독립성 요건(공인회계사법 §21·§33)을 어기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2개월 이내에 새 감사인을 선임합니다(§13①).

근거: 근거: 외감법 §8①, §13①, §47②1호, 시행령 §9①



04

판정 순서와 일정

질문 5개로 대상 여부, 기한, 지정 가능성을 봅니다

도해 3. 12월 결산 법인의 일정

개시일 이전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회사의 선임 기한입니다. 12월 결산이면 전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10①).

개시 후 45일·4개월
직전에 감사를 받은 회사는 45일(2월 중순),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4월 말) 이내에 선임합니다(§10①②).

총회 6주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총회 4주 전입니다(영 §8①).

총회 1주 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영 §27①), 회사는 재무제표와 함께 본점에 5년간 비치합니다(상법 §448①).

총회 후 2주 이내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영 §27③).

도해 4. 판정 순서

질문	판정
1.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상장 예정일까요?	예: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법 §4①1·2호). 아니오: 질문 2로 갑니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일까요?	예: 대상입니다. 아니오: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 100억원, 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유한회사는 사원 50명을 더한 5개 중 3개).
3. 대상이라면 선임 기한은 언제일까요?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개시일 이전, 직전 감사를 받은 회사는 45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입니다. 선정 주체는 회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10④). 선임 뒤 정기총회 보고와 증권선물위원회 보고가 필요합니다(§12).
4. 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선임 뒤 지정 대상일까요?	상장법인 또는 자산 5천억원(1천억원) 이상, 대주주 측 50% 이상, 대표이사 겸직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 지정 선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6년 내 감리에서 위반이 없던 회사 등은 제외됩니다.
5. 감사인에게 맡기려는 업무가 감사 외 업무일까요?	재무제표 작성,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외감법 §6⑥), 자산 매매 실사·가치평가(공인회계사법 §21②)는 감사계약 기간에 같은 회사에 할 수 없습니다. 감사 전에 담당을 나눕니다.

보수

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직전 감사보고서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대상 여부와 선임 기한을 확인합니다. 감사시간과 투입 인력은 그 뒤에 정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6개 연속 선임 뒤 지정 예정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까요?

6개 사업연도 연속 선임에 따른 지정(법 §11②)은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며 급한 경우 기간을 줄이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지정 내용은 지정기준일까지 통지되고 재지정 요청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하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재지정 사유는 외국투자가 출자조건,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등이고, 영 §17⑦ 1~3호에 보수나 일정은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통지 때 적정 감사시간·보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영 §17⑧⑦). 감사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체결합니다.

근거: 외감법 §11②④⑤, 시행령 §17②③⑤⑥⑦⑧

Q2. 감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인이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자료와 비용 제공을 요청받은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감리에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지정 요구 대상이 되며 경미한 위반은 제외됩니다.

근거: 외감법 §22②③④⑤, §11①4호, §47②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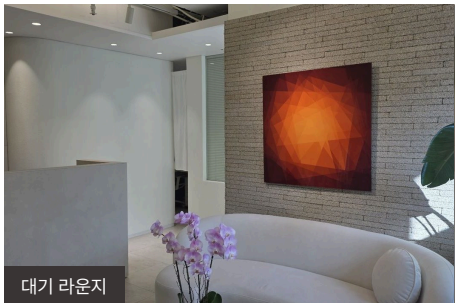
Q3. 감사인에게 결산 처리를 같이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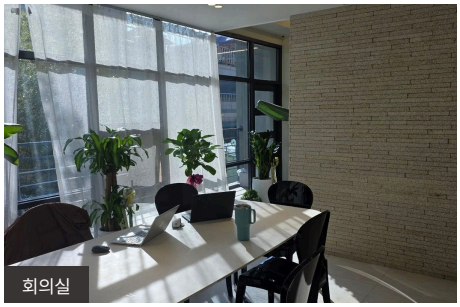
안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고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대신 작성하거나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에 응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작성하거나 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42 2호),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는 지정 요구 대상입니다(§11①5호). 당사가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사에는 결산 정리, 계산·분개, 회계처리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산 정리가 필요하면 감사를 맡지 않은 회계법인이나 내부 인력과 계약 전에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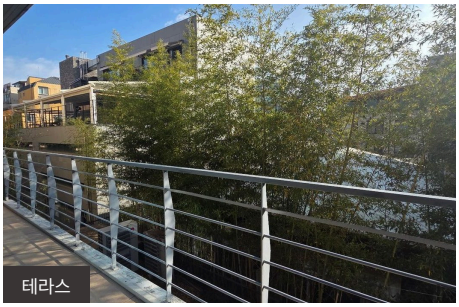
근거: 외감법 §6①⑥, §11①5호, §42 2호, 시행령 §8⑥, 공인회계사법 §21②

담당 회계사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